

## 부록 2-가-1

### 대한민국

1.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적용되며, 대한민국이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대한민국이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HSK의 수정을 규정한다. 특히, 이 부록에 포함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은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규정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. HSK의 그 밖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이 부록에 기술된 수량의 영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대한민국 영역으로 수입된다. 더 나아가,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SK의 다른 곳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.
2. 제2.7조제7항 및 이 부록의 제5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, 이 협정이 7월 1일 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6월 30일 전에 발효되는 경우, 그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 적용되는 TRQ 물량은 그 연도의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축소된다. 제2.7조제7항 및 이 부록의 제5항과 제6항에도 불구하고, 이 협정이 7월 1일 후 그리고 그 다음 연도 6월 30일 전에 발효되는 경우, 그 연도에 관련된 허가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첫 번째 영업일부터 운영된다.

####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대한 허가제도

3. 대한민국은 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을 운영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허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가호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. 양 당사국은 관세율할당 물량을 받을 자격을 포함하여 허가제도의 정책 및 절차와 이에 대한 어떠한 변경 또는 개정에 대해서도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합의한다.

- 가. 1)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이 3년 연속기간 중 2년 동안 95퍼센트 미만이 사용된 경우, 영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쿼터 내 물량의 불완전한 사용의 원인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하여 배분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상품무역 위원회에서 협의한다. 협의에서 양 당사국은 일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.
- 2) 양 당사국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최한다.

- 3) 대한민국은 관세율할당의 완전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에 관하여 양 당사국이 도달한 상품무역 위원회에서의 결정을 그 결정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이행한다. 그리고
  - 4) 대한민국은 다음 중 한 가지가 발생하는 경우 영국의 원산지 상품이 관련 관세율할당에 따라 선착순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한다.
    - 가) 대한민국이 가호3)목에 따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, 또는
    - 나) 가호1)목에 언급된 협의가 협의 요청일 후 9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까지 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
- 나.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이 항의 적용 또는 운영에 관련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. 그 협의는 다른 쪽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개시한다.

#### 국영무역기업

4. 대한민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영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, 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## 맥아 및 맥주맥

5. 가.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| 연도 | 물량(메트릭톤) |
|----|----------|
| 9  | 1,521    |
| 10 | 1,567    |
| 11 | 1,614    |
| 12 | 1,662    |
| 13 | 1,712    |
| 14 | 1,764    |
| 15 | 1,816    |
| 16 | 무제한      |
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접수한 서면신청에 대해 선착순으로 매 연도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이 관세율할당을 위한 허가를 배분한다. 첫째 월 첫째 영업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인이 요청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, 공사는 신청자들 간에 관세율할당 물량을 비율을 기준으로 배분한다.

첫째 월 동안 요청된 관세율할당 총 물량이 그 연도의 관세율할당 총 물량보다 적은 경우, 공사는 그 연도 말까지 내내 지속적으로 선착순에 기초하여 관세율할당을 배분한다. 공사가 신청인에게 발급하는 각 허가는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하며, 미사용된 허가는 90일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반납되고, 공사는 허가가 반납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선착순으로 신청자들에게 미사용된 물량을 재배분한다.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-가

제1항차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“15”에 따라 철폐된다.

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: 1003.00.1000 그리고  
1107.10.0000.

## 보조사료

6. 가.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후에 기술된 영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.

| 연도 | 물량(메트릭톤) |
|----|----------|
| 9  | 609      |
| 10 | 627      |
| 11 | 646      |
| 12 | 665      |
| 13 | 무제한      |

한국단미사료협회 및 한국대용유사료협회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하며 허가제도를 통해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. 이 관세율할당은 신청자가 허가서가 발급된 연도 직전 24개월 동안 수입한 다후에 규정된 원산지 상품의 물량과 그 연도에 신청자가 요청한 원산지 상품의 물량에 근거하여 배분된다.

- 나.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-가 제1항아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“12”에 따라 철폐된다.
- 다.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HSK 세번에 적용된다: 2309.90.2010, 2309.90.2020, 2309.90.2099 그리고 2309.90.9000.